

서울 행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79267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원 고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2층(서초동, 양지빌딩)

대표자 회장 정연순

2. 참여연대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통인동)

공동대표 정강자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맥

담당변호사 박수빈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해주희

피 고 국방부장관

소송수행자 박정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완기

변 론 종 결 2017. 8. 11.

판 결 선 고 2017. 11. 1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6. 8. 4. 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원고 민변'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 참여연대에 대하여, 2016. 7. 30. 별지2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하여 한, 2016. 8. 10. 별지3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하여 한, 2016. 10. 19. 별지4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하여 한 각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한미 양국은 2016. 2. 7.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THAAD), 이하 '사드'라고만 한다] 배치 관련 협의 개시를 공동으로 발표하였고, 2016. 3. 4. 사드 배치 관련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을 체결한 후 사드 배치 관련 협의를 진행하였다.

나. 국방부는 2016. 7. 8.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고, 2016. 7. 13.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장소로 경상북도 성주 지역을 건의하였고, 이에 대해 양국 국방장관이 승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다. 국방부는 2016. 9. 30. 사드를 배치할 제3의 부지로 까치산, 염속봉산, 달마산 등 3개 부지에 대해 한미 공동실무단이 평가한 결과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이 위치한 달마산이 부지 가용성 평가기준을 가장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 한미 국방부가 이곳을 최종적인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라. 원고 민변은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하여, 원고 참여연대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하여 2016. 7. 8. 피고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2016. 7. 30. 원고 참여연대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공동실무단 운영결과 보고서는 한미2급 비밀로 공개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2016. 8. 4. 원고 민변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군사적 효용성 검토결과 보고서는 한미II급 비밀로 공개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각 비공개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 참여연대는 2016. 7. 29. 피고에게 별지3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10.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공동실무단 운영결과 보고서는 한미II급 비밀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의 비공개처분을 하였다.

사. 원고 참여연대는 2016. 10. 12. 피고에게 별지4 목록 각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19. '부지 가용성 평가내용', '공동실무단 평가 결과 보고서', '제3부지 평가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회의자료'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한미 2급 비밀로 공개가 불가하고, '전문가 자문 내용, 전문가 명단'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비공개처분

을 하였다(이하 위 각 비공개처분 중 정보가 한미 2급 비밀에 해당함을 사유로 들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부분을 '이 사건 2호 거부처분'이라 하고, 별지4 목록 기재 '전문가 자문 내용, 전문가 명단'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6호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2호 거부처분에 관하여

가) 피고는 이 사건 2호 거부처분을 함에 있어 비공개사유로 단지 '한미Ⅱ급 비밀로 공개가 불가하다'고 밝혔을 뿐 해할 우려가 있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무엇인지, 어떻게 현저히 해하는지, '한미Ⅱ급 비밀'이라는 용어가 근거하는 법령이 무엇인지 또는 어떠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비공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나)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에 관하여는 이미 언론을 통하여 보고되거나 국민에게 홍보되고 있고, 사드에 관한 검증된 정보를 공개하여 민주적 공론의 장에서 토의되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안전보장 차원에서 더욱 장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2호 거부처분의 대상이 된 정보들은 공개된다 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6호 거부처분에 관하여

가) 피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6호 거부처분을 하면서 그 사유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으나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한 사유가 아니므로 위법하다.

나) 이 사건 6호 거부처분의 대상이 된 전문가 자문 내용 및 전문가 명단의 경우 사드 배치라는 매우 중대한 국가적 사안을 검토·논의한 전문가들에 대한 정보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 또는 (마)목 소정의 정부의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개되어야 한다.

다) 설령 공무원 등에 준하는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 자문 내용에 관하여서는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분리하여 공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5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2호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1)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 위반 여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고,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도 공공기관이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2호 거부처분에 관한 비공개사유로 '한미 2급 비밀로서 공개가 불가하다'거나 '한미 2급 비밀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들면서 그 근거

법령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를 들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2호 거부처분에 관하여 구체적인 적시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2호 거부처분에 관하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또는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9조는 예외적으로 비공개대상정보를 열거하고 있고, 그 중 하나로 제1항 제2호에서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들고 있다. 결국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하려면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으로서의 알 권리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공개청구권을 넘어 국민이 문서 공개에 관하여 특별히 가지는 구체적인 이익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커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정보의 내용, 공개를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그에 관한 공개청구권자의 구체적 이익 등과 행정청이 공개 거부 사유로 드는 외교관계 등에 대한 영향, 국가이익의 실질적 손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갑 제3, 4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정보를 열람·심사한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유는 북한이 한 일련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또는 도발에 대응하여 국군과 주한미군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인 사실, 한미 양국은 2016. 3. 4.경부터 한미 공동실무단을 구성하여 비공개를 전제로 사드 배치 문제를 협의한 사실, 한미 공동실무단에 참여한 실무자들은 각 국가기관과의 기밀정보 비공개 합의문에 서

명하였고, 기밀정보를 적법한 수령 권한을 가진 자 이외에는 공개하지 아니하겠다고 서약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제2호 거부처분의 대상 정보 중 별지1, 2, 3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하여 2016. 7. 13.자로 작성된 '공동실무단 운영결과 보고서 승인 건의'라는 제목의 문서(이하 '운영결과 보고서'라 한다)를, 별지4 목록 제1, 3항 기재 각 정보에 관하여 2016. 9. 29.자로 작성된 '제3부지 평가결과 보고서 승인 건의'라는 제목의 문서(이하 '제3부지 보고서'라 한다)를 각 보유한 사실, 운영결과 보고서와 제3부지 보고서에는 '한미 2급 비밀'이라는 표시가 있고, 사드의 구체적인 미사일 방어 범위와 능력 등의 군사적 효용성을 기준으로 다수의 후보지에 이를 배치하였을 경우의 시뮬레이션 분석, 현장실사 등의 검토 내용을 포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운영결과 보고서 및 제3부지 보고서는 이를 공개할 경우 북한 또는 제3국이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이 위치한 달마산 부지에 설치된 사드의 방어 범위와 능력, 배치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지득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사드의 미사일 방어능력을 회피하거나 무력화할 수 있는 핵무기 또는 탄도미사일 등의 무기를 개발하게 될 우려가 있고,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이 국민과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므로, 위 각 보고서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이에 관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

또한 사드 배치는 한미 공동실무단이 비공개를 전제로 한 협의를 거쳐 한미 동맹의 차원에서 결정되었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영결과 보고서 및 제3부지 보고서를 한국의 경우 '군사 2급 비밀'로, 미국의 경우 '시크릿(Secret)'으로 지정하여 양국이 협의 하에 군사기밀로 관리하기로 하였는바, 이를 피고가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경우 한미 군사 당국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고 한미 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정보는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이에 관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2호 거부처분의 대상이 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고는 운영결과 보고서 및 제3부지보고서가 '한미 2급 비밀'로서 한미 양국 국방부장관이 각각 군사 2급 비밀로 지정한 「군사기밀 보호법」 상 '군사 2급 비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군사비밀보호에 관한 보안협정」(1987. 9. 24. 발효) 소정의 '군사비밀'에도 해당하므로, 이 사건 2호 거부처분의 대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이 법원에 이르러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2호 거부처분의 처분사유로 한미 2급 비밀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적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만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대상 정보가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

에 해당한다면 '정보가 한미 2급 비밀이라는 사실'로부터 그것이 공개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게 될 수 있고, 그 자체로 군사기밀 보호법상 비밀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며, 군사기밀 보호법의 목적이 군사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 하는 것(군사기밀 보호법 제1조 참조)이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양자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 또한 유사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가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처분 사유는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허용함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2호 거부처분의 대상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규정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대상 정보가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이 명백하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9351 판결 참조).

운영결과 보고서 및 제3부지 보고서에 '한미 2급 비밀'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위 각 문서는 피고를 최종 결재자로 하여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군사기밀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군사기

밀을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I급 비밀, II급 비밀, III급 비밀로 등급을 구분하고,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을 군사 II급 비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 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별표 1]에 II급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 '비밀 군사외교활동'[제2호 (나)목] 및 '주변국과 외교상 마찰이 우려되는 대외정책 및 정보보고'[제2호 (마)목]를 들고 있다. 또한 군사기밀 보호법 제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보안업무규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피고는 군사 I, II, III급 비밀의 지정권자이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군사비밀보호에 관한 보안협정」 제4조는 한국의 군사 I급 비밀은 미국의 톱 시크릿과, 군사 II급 비밀은 시크릿과, 군사 III급 비밀은 컨피덴셜과 같다고 규정하여 양국의 비밀분류에 상호 대응하는 비밀분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과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한미 공동실무단은 운영결과 보고서 및 제3부지 보고서에 '한미 2급 비밀'이라는 표시를 함으로써 이를 한국의 군사 II급 비밀 및 미국의 시크릿으로 관리할 의사로 작성하였음이 인정되고, 군사 II급 비밀을 지정할 수 있는 피고가 이를 최종적으로 결재함으로써 위 각 문서는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 II급 비밀로 지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2호 거부처분의 대상이 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2호 거부처분의 대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2호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라. 이 사건 6호 거부처분에 적법 여부

1) 이 사건 6호 거부처분을 하면서 그 사유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든 것이 위법한지 여부

살피건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가 정하는 비공개사유가 아님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바,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바탕으로 그 배치 부지 등을 검토한 운영결과 보고서 및 제3부지 보고서의 성격이 의사결정 과정에 해당하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문구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사유와 동일한 점에 비추어, 피고의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적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사유를 든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명시적으로 그 처분서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라는 기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3부지 보고서의 작성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정보를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제3부지 보고서의 작성에 민간의 환경 전문가, 전자파 전문가 및 토목 전문가가 평가단으로 참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을 의미하므로, 위 민간 전문가들이 위 규정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마)목은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민간 전문가들의 성명과 직업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어떠한 필요가 있는지에 관하여 원고는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민간 전문가들의 성명·직업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이 사건 6호 거부처분의 사유로 추가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사유는 이미 이 사건 6호 거부처분 당시 처분사유로 되었으므로, 제3부지 보고서에 포함된 전문가 자문내용 및 전문가 명단이 위 규정이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

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참조). 그리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제3부지 보고서의 작성에 평가단으로 참여한 민간의 환경 전문가, 전자파 전문가 및 토목 전문가의 성명 및 개별적인 자문 내용을 공개하게 되는 경우 향후 사드 배치와 같이 국민적인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정책 결정을 함에 있어 이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전문가가 이에 참여하기를 꺼려하거나 외부적 압력을 의식하여 적극적으로 소신에 따라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점, ② 전문가의 자문 내용이 반영되어 작성된 제3부지 보고서에 포함된 사드 배치 부지의 타당성 검토 등 정보 자체의 공개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의견을 개진한 해당 전문가의 개별적인 성명과 자문내용은 국민의 주된 관심사라고 보기 어려워 이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제3부지 보고서는 군사기밀에 해당하거나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데, 그 작성에 관여한 전문가들의 성명을 공개하는 경우 비밀을 지득한 사람이 일반에 공개되어 비밀의 유지·관리에도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3부지 보고서에 포함된 전문가 자문내용 및 전문가 명단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6호 거부처분의 대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같은 항 제6호 (라)목 및 (마)목에 따라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6호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철

김용철




판사

김남균

김남균



판사 강민기 

열람용

별지1

목 록

2016. 7. 8.자 한미 군 당국의 발표가 나오기까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한 문
서

열람용

별지2

목 록

1. 2016. 7. 8.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수 개월간의 검토를 통해 확인했다고 발표한 ‘대한민국 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의 근거자료
2. 2016. 7. 8.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발표한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선택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검토 현황 자료
3.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회의 자료: 회의일자, 참석자, 안건, 회의록.

별지3

목 록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작성, 승인한 운영결과보고서(혹은 검토보고서).

열람용

별지4

목 록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의 사드 배치 제3부지 평가 관련 자료

- 부지 가용성 평가 내용
- 전문가 자문 내용, 전문가 명단
- 공동실무단 평가 결과보고서
- 제3부지 평가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회의자료: 회의 일자, 참석자, 안건, 회의록
등

별지5

관계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끝.

■ 군사기밀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사기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 관련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

제3조(군사기밀의 구분)

- ① 군사기밀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I급비밀, II급비밀, III급비밀로 등급을 구분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군사기밀의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군사기밀의 지정 원칙 및 지정권자)

- ① 군사기밀은 그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군사기밀의 등급별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3조(군사기밀의 등급 구분)

-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군사기밀의 등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군사 I급비밀: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치명적인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
 2. 군사 II급비밀: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
 3. 군사 III급비밀: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
- ② 제1항에 따른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군사기밀의 지정권자)

-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군사 I급비밀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I급비밀 취급 인가권자 및 그가 지정하는 사람

2. 방위사업청장
 3. 국방정보본부장
 4. 해군작전사령관, 해병대사령관, 공군작전사령관
 5. 국군기무사령관, 국군정보사령관
 6.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장
 7.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군사 II급비밀 및 군사 III급비밀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사 I급비밀 지정권자 및 그가 지정하는 사람
 2. 「보안업무규정」 제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II급비밀 및 III급비밀 취급 인가권자 및 그가 지정하는 사람
 3.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정보본부의 장성급 장교
 4.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장, 편제상 장성급 장교인 참모
 5. 육군·해군·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본부의 장성급 장교 및 그 직할부대장
 6. 각군 예하 부대 중 편제상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의 장, 장성급 장교인 참모
 7.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별표 1] 군사기밀의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제3조 제2항 관련)

구분	세부 기준
2. II급비밀	가. 집단안보결성 추진계획 나. 비밀 군사외교활동 다. 전략무기 또는 유도무기의 사용지침서 및 완전한 제원 라. 특수공작계획 또는 보안이 필요한 특수작전계획 마. 주변국과 외교상 마찰이 우려되는 대외정책 및 정보보고 바. 군사령부급 이상까지 모두 포함된 편제 또는 장비 현황 사. 국가적 차원의 동원내용이 포함된 동원계획 아.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력 정비 및 운영·유지 계획 자. 간첩용의자를 내사 또는 수사 중인 수사기관 또는 군부대 활동내용 차. 암호화 프로그램 카. 군용 암호자재